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황희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「도서관법」이 개정(법을 제17706호, 2020. 12. 22. 일부개정, 2021. 6. 2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수행했던 ‘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제작·제작지원 및 제공’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(법 제20조)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및 일부 삭제(안 제13조 제2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)
- 나. ‘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제작·제작지원 및 제공’을 위해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(안 제21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4.1. ~ 5.11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, 제13조제5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”을 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”으로, 제5항 중 “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부터 제2항”으로, 제6항 중 “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부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제출)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개인의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장애인

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 ① (생략)	제13조(도서관자료의 납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(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 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)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~4.(생략)	1.~4.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 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 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 한 자료로 한다.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.	④ <u>삭제</u>
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	④ -----제2항----- -----

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~2호 (생략)

3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: 1부

⑥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1.~2호 (현행과 같음)

3. 삭제

⑤ ----- 제2항-----

제21조의2(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제출)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개인의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

관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문화체육
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
장애인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
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도서관자
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
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
장애인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④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제3항에
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문화체
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
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도서관자
료 제출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
부령으로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	
연 락 처	(044) 203 - 2618